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68

발의연월일: 2020. 6. 23.

발 의 자 : 이 영 · 유경준 · 추경호

김석기 · 김영식 · 김정재

金炳旭・김상훈・전주혜

양금희 • 유의동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기업주도형벤처캐피탈(CVC:Corporate Venture Capital)이란 대기업이 자회사 형태로 설립한 벤처캐피탈을 뜻함. 일반적인 벤처캐피탈이투자자를 모집한 후 공동으로 투자한다면, CVC는 모기업의 성장을 위해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성격이 강함.

CVC의 특징은 기술기반 스타트업에 전략적으로 투자 후 M&A를 통해 자사 사업에 적용해 투자-성장-회수로 이어지는 벤처 선순환 구조의 촉매제 역할을 한다는 것임. 글로벌 CVC의 대표적 사례로서 구글은 구글벤처스를 설립해 UBER, Blue Bottle 등 유망 벤처기업 뿐만아니라 AI, 로보틱스 및 수명연장 분야 등 신기술에 연 3억 달러 이상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인수·합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음.

반면 국내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, CVC는 금융업으

로 분류되어 있어 대기업의 투자가 제한되고 있음.

이에 일반지주회사의 주식소유가 금지되는 대상에서 CVC를 제외하고, 이로 인한 사금고화 등의 부작용 발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해 투자, 성장, 회수로 이어지는 벤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8조의2제2항제5호 및 제23조의2제3항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8조의2제2항제5호 본문 중 "金融持株會社외의 持株會社"를 "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"로, "一般持株會社"를 "일반지주회사"로, "金融業 또는 保險業을 영위하는 國內會社의 株式을 所有"를 "금융업 또는 보험업(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영위하는 업은 금융업 또는 보험업으로 보지 아니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"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제3호 본문 및 단서 중 "금융업이나"를 각각 "금융업 또는"으로 한다.

제23조의2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중 "제3항"을 "제4항"으로 한다.

③ 지주회사,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1항의 특수관계인 중 지주회사의 특수관계인이 주식을 보유한 회사에 대하여 투자·융자 등의업무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통

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24조의2제2항 본문 중 "제1항 또는 제3항"을 "제1항, 제3항 또는 제4항"으로 한다.

제66조제1항제9호의2 중 "제4항"을 "제5항"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의 시행에 따른 경과조치) 제8조의2제2항제5호 본문 및 제23조의2제3항 중 "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"은 2020년 8월 11일까지는 "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"으로 본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혅 했 개 정 안 第8條의2(지주회사 등의 행위제 제8조의2(지주회사 등의 행위제 한 등) ① (생 략) 한 등) ① (현행과 같음) ② 持株會社는 다음 각 호의 |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다. 1. ~ 4. (생략) 1. ~ 4. (현행과 같음) 5. 金融持株會社외의 持株會社 | 5. 금융지주회사 외의 지주회사 (이하 "一般持株會社"라 한 -----일반지주회사----------금융업 또는 보험업 다)인 경우 金融業 또는 保險 (「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 業을 영위하는 國內會社의 株 式을 所有하는 행위. 다만, 일 률 | 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 자회사 및 「여신전문금융업 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설 법」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 립될 당시에 금융업 또는 보 업자가 영위하는 업은 금융업 험업을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때에는 또는 보험업으로 보지 아니한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을 설립된 날부터 2년간은 그 국 영위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소유-----. 있다. ③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- 1. 2. (생략)
- 3.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는 행위. 다만,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당시에 금융업이나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자회사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2년간 그 손자회사를 지배할 수 있다.

④ ~ ⑦ (생 략)

제23조의2(특수관계인에 대한 부 제 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) ① · ② (생 략)

<신 설>

1. • 2. (현행과 같음)
3. 금융업 또는
<u>업 또는</u>
④ ~ ⑦ (현행과 같음)
23조의2(특수관계인에 대한 부
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) ①・
② (현행과 같음)
③ 지주회사, 자회사 또는 손자
회사가 주식을 소유한 「벤처
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」에 따
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
「여신전문금융업법」에 따른
신기술사업금융업자는 제1항의
특수관계인 중 지주회사의 특
수관계인이 주식을 보유한 회
<u>사에 대하여 투자·융자 등의</u>
업무를 하는 경우 제1항 각 호
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

를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부

- ③ (생략)
- ④ 특수관계인은 누구에게든지 제1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해당 행위에 관여하여서는 아니된다.

第24條의2(課徵金) ① (생 략)

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23조 (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)제1항 제7호 또는 같은 조 제2항, 제2 3조의2(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)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특수관계인 또는 회사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 대출액이 없는 경우 등에는 2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.

第66條(罰則) ① 다음 각 호의 어

당한 이익을 귀속시키는 행위
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<u>④</u> (현행 제3항과 같음)
<u> </u>
제4항

第24條의2(課徴金) ① (현행과 같
<u>수</u>)
②
<u>제1항,</u>
제3항 또는 제4항
第66條(罰則) ①

느 하나에 ㅎ	대당하는	者는	3年
이하의 懲役	또는	2億원	이하
의 罰金에 處	한다.		
1. ~ 9. (생	략)		
9의2. 제23조	(불공정	거래행	위의
금지)제1항	제7호,	제232	조의2
(특수관계인	[에 대	한 부	당한
이익제공 등	등 금지)	제1항	또는
<u>제4항</u> 을 위	반한 자		
9의3. ~ 11.	(생 략	=)	

② (생 략)

,
1. ~ 9. (현행과 같음)
9의2
제5항
9의3. ~ 11. (현행과 같음)
② (현행과 같음)